

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목 차

제 1 장 관련근거

제 2 장 국내제조

제 3 장 수입제품

<활용 유의사항>

본 안내서는 '19.12.1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「국가계약법」등 관련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원가관리안내서 내용의 제경비율은 고정비율이 아니라 안내서 발행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경비율로 기업경영분석, 시중노임단가 등 관련 자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제 1 장 관련근거

제 1 조 (목적)

본 안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타재가급여인 복지용구의 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을 안내하여 공급업체(제조·수입)의 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이해를 증진시키고 복지용구 가격산출의 객관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함

제 2 조 (관련근거)

- ①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」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- ②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- ③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: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- ④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: 기획재정부(www.moef.go.kr)
- ⑤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: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
 - 제6조(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)
- ⑥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: 노인장기요양보험(www.longtermcare.or.kr)
 - [별표4]공단산출가격 산정기준(제2조제1호 관련)
 - [별표6]월 대여가격 산정기준(제27조 관련)
 - [별표7]복지용구 환율 연동 조정기준(제28조 관련)

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 \Rightarrow

제 3 조 (업무흐름도)

1	물품제조
2	물품수입

제조·수입업자

①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

② 급여비용 조정 신청서

③ 직권 재평가 자료제출

제조·수입업자

가격 산정

① 제조원가분석

② 수입가격분석

국민건강보험공단

가격 조사

① 시장가격조사

② 유통가격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

尣

행정예고 60일 후 급여제품 목록고시 시행

보건복지부

◇ 장기요양위원회 심의

보건복지부

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

국민건강보험공단

가격협의 (최저가격 기준)

 \Rightarrow

공단업체

※ 행정예고 기간(60일)은 의견접수기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

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제 2 장 제조제품

제 1 조 (국내제조 제품)

1. 원가의 구성

국내제조 제품은 원자재(원료)를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,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

	구 분	내용
① 재 료 비		- 제품의 형상을 이루는 직접적인 재료의 가치, 도면을 구성하는 재료
제	② 작 업 설	- 제품 제조 또는 가공 중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원재료의 부산물로 매각가치나 이용가치가 있을 때 재료비에서 공제
조	③ 노 무 비	- 제품 제조를 위한 노동력에 지급되는 대가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분류
원	④ 외주가공비	- 자체 가공이 불가능하여 구매한 재료를 가공이 가능한 외부업체에 의뢰한 비용
가	⑤ 제조경비	-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중 재료비,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를 말함
∠ r	⑥ 소 계	① 재료비 - ② 작업설 + ③ 노무비 + ④ 외주가공비 + ⑤ 제조경비
7	일반관리비	-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은 비용
⑧ 적정이윤 -		-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제조업체의 영업이익
9	총 원 가	⑥ 제조원가(소 계) + ⑦ 판매비와 관리비 + ⑧ 적정이윤
10	유통비용	- 총원가와 최종소비자가격의 차이로 복지용구사업소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제품의 물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
1	부가가치세	-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부가가치세로 영세율을 제외하고 모두 10%
_	¦단산출가격 조원가분석)	⑨ 총원가 + ⑩ 유통비용 + ⑪ 부가가치세



LONG TERM CARE **노인장기요양보험**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2. 산정방법

가. 재료비

1) 직접재료비

○ 제품의 형상을 이루는 직접적인 재료의 가치. 도면을 구성하는 재료 예) 철판. 파이프. 볼트. 너트 등

<가공재료 산정방법: 예시>

- 재 료 : 알루미늄 파이프 Φ25, 1.2t, 1본(6m)
- 단 가: 10.000원
- 투입량(실제소요량) : 3m(2.8m) = 3m ÷ 6m = 50% × 10,000원 = 5,000원(재료비)
 - ※ 투입량 실제소요량 = 0.2m
 - ①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 : 0.2m 파이프 고철 판매금액 만큼 작업설에 기재
 - ② 다른 제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: 5,000원 333원(0.2m ÷ 6m × 10,000원) = 4,667원(재료비)
 - ③ 가공 중에 없어지거나 버려지는 경우 : 5,000원(재료비)

<부분품 및 완성재료(볼트, 너트 등) 산정방법: 예시>

- 재 료: 모터 1Set
- 단 가: 200,000원
- 소요량 : 1개 = 1개 × 200,000원 = 200,000원(재료비)

<수입 재료비 산정방법>

○ 수입제품 계산방법에서 매입원가 금액을 재료비로 계산



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2) 간접재료비

- 제품의 형상을 이루진 않지만.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(ex 본드. 윤활유. 테이프 등)
 - 재무제표 중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에서 소모품비 계정 금액 인정(간접경비율로 계산)
 - 단.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(소모품비. 기타경비 등)로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재료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직접 기재

<간접재료비 산정방법: 예시>

○ 재 료 : 본드, 1통(2kg)

○ 단 가: 5,000원, 1/kg: 2,500원

○ 소요량

① 개당 소요량을 측정불가능 한 경우 : 공정에 투입되는 본드(2kg) 수량 ÷ 제조수량

- 1.5통 소요, 100개 생산 : 3kg(1.5통) ÷ 100개 = 0.03kg × 2,500원 = 75원(재료비)

② 개당 소요량을 측정가능 한 경우 : 저울로 측정 = 측정량 × 2,500원 = 재료비



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- 나. 노무비(직접노무비 + 간접노무비)
 - 1) 직접노무비
 - **공정에 투입이 되어 직접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급여**를 말하며, 일반적으로 생산직의 경우 노무비(제조원가명세서), 사무직의 경우 인건비(손익계산서)로 분류
 - ※ 공단은「계약예규」(기획재정부 발표)에 따라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(중소기업중앙회 발표)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며. 해당 노임단가를 초과한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음

<직접노무비 산정방법: 예시>

- 공 정 : 조립
- 임 금:월 급여[기본급+상여금+제수당+퇴직급여충당금(적립금)] 2,300,000원, 월 근로시간 200시간
- 노무비
 - ① 공정 투입시간에 따른 생산량으로 계산 : 투입시간 ÷ 조립수량
 - 50시간(투입시간) ÷ 500개(조립수량) = 0.1시간(투입공수)
 - 2,300,000원(월 급여) ÷ 200시간(월 근로시간) = 11,500원(시간당 임금)
 - 0.1시간 × 11,500원 = 1,150원(해당공정 직접노무비)
 - ② 공정 투입시간에 따른 생산량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
 - 해당 공정 작업시간 수기로 측정(약 3~4개 정도) : 측정결과 10분 = 10분 ÷ 60분 = 0.167(투입공수)
 - 2,300,000원(월 급여) ÷ 200시간(월 근로시간) = 11,500원(시간당 임금)
 - 0.167시간 × 11.500원 = 1.920원(해당공정 직접노무비)



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2) 간접노무비

- **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직 이외에 생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급여**를 말하며, 직접노무비와 같이 노무비 (제조원가명세서)에 분류 예) **공장장, 생산관리, 품질관리, 생산기술, 제품개발 등**
 - ※「계약예규」(기획재정부 발표)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

<간접노무비 산정방법: 예시>

- 생산직(직접노무비) 전체 급여: 100,000,000원
- 간접노무비 전체 급여 : 50,000,000원
- 해당 제품 직접노무비 : 100,000원
- 간접노무비율 : 간접노무비 전체 급여 ÷ 생산직(직접노무비) 전체 급여
 - 50,000,000원(간접 노무비 전체 급여) ÷ 100,000,000원(생산직(직접노무비) 전체 급여) = 50%(간접노무비율)
- 간접노무비 : 직접노무비 × 간접노무비율
 - 100,000원(직접노무비) × 50%(간접노무비율) = 50,000원
 - ※ 공단은「계약예규」(기획재정부 발표)에 따라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

다. 외주가공비

- 자체 가공이 불가능하여 구매한 재료를 가공이 가능한 외부업체에 의뢰한 비용
 - ※ 가공된 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→ 재료비로 계산
 - ※ 가공 업체가 자료를 구매하였으나. 재료비와 가공비가 분리 가능한 경우 → 재료비와 외주가공비 분리하여 계산

<외주가공비 산정방법: 예시>

○ 가공내용 : 알루미늄 파이프 3m 도장

○ 가공비 : 10,000원

○ 외주가공비

① 절단하여 쓰는 경우

- 1.5m 사용 시 : 1.5m ÷ 3m = 50%(투입량) × 10.000원(가공비) = 5.000원(외주가공비)

②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

- 3m ÷ 3m = 100%(투입량) × 10.000원(가공비) = 10.000원(외주가공비)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

라. 경 비

-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중 재료비.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를 말함
 - 「국가계약법」시행규칙 제6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)에 따르면 경비는 직접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간접경비율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,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관련이 있는 경비만 인정하게 되어 있음
 - 외주가공비(별도 계산중), 연구개발비, 등 **해당제품과 관련 있는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은 관련 증명자료를** 제출해야 인정이 가능함 ※ 단.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이 끝나면 경비에서 제외하여 계산
 - 외주가공비 및 연구개발비 등 이외 경비에 대해서 직접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직접 계산
 - ※「계약예규」(기획재정부 발표) 제2장 예정가격 작성기준 34조(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)에 따라 전문업체 경비율을 참고할 수 있으며, 현재 최근 기업경영분석 제조업(중소기업)의 3년 평균 경비율과 공급업체의 경비율을 비교하여 적용

<경비 산정방법>

○ (재료비 + 노무비) × 간접경비율 + 연구개발비

<직접경비 산정방법(연구개발비): 예시>

- 연구개발비 투입비용 : 10,000,000원, 연 생산 가능 수량 : 1,000대
- 상각기간 : 5년(가정) …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(개인사업자도 동일한 기간 적용)
- 연구개발비
- 10.000,000원(연구개발비 투입비용) ÷ 5년(이연상각기간) = 2,000,000원(연 상각금액)
- 2,000,000원(연 상각금액) ÷ 1,000대(생산가능 수량) = 2,000원(개당 연구개발비)

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<간접경비율 산정방법: 예시>

기업경영분석 제조업(중소기업) 제조원가명세서(2018년)

계정과목	금 액(원)	제조경비 인정여부	경비율(%)	비고
I . 재료비	284,999,249	_		
II. 노무비	51,399,576	_		
Ⅲ. 경비	115,302,360	_	17.1%	
1. 복리후생비	5,379,726	0	1.19%	
2. 전력비	6,553,082	0	1.45%	
3. 가스수도비	1,843,100	0	0.41%	
4. 감가상각비	11,987,578	0	2.65%	
5. 세금과공과	1,307,771	0	0.29%	
6. 임차료	3,108,136	0	0.69%	
7. 보험료	1,763,667	0	0.39%	
8. 수선비	1,731,808	0	0.38%	
9. 외주가공비	47,379,490	X		직접계산
10. 운반·포장·하역·보관	7,201,372	X		재료비+노무비로 별도계산
11. 경상개발비	3,171,708	X		직접계산
12. 기타경비	23,874,920	0	5.29%	
IV.당기총제조원가	449,587,381			재료비 + 노무비 + 경비

 \bigcirc 제조경비율 : = \sum (제조경비 인정금액) ÷ (재료비 + 노무비)

= 17.1% = 57,549,788원 ÷ 336,398,825원

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마. 일반관리비

-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은 비용
 - 「국가계약법」시행규칙 제6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)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관련이 있는 일반관리비만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, 동법 제8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)를 초과하지 못함 ※ 11. 기타물품의 제조·구매 : 100분의 11 적용
 - 광고선전비 같이 해당제품과 관련 있는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 가능

<일반관리비 산정방법>

○ 제조원가 × 일반관리비율 + 광고선전비

<광고선전비 산정방법: 예시>

○ 광고비 : 5,000,000원 ○ 제조수량 : 1,000대

○ 광고선전비

- 5.000,000원(광고비) ÷ 1개(광고제품 수) = 5,000,000원(해당제품 광고비)

- 5,000,000원(해당제품 광고비) ÷ 1,000대(연 생산가능 수량) = 5,000원(개당 광고선전비)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

<일반관리비율 산정방법 : 예시>

손익계산서(예시)

계정과목	금 액(원)	일반관리비 인정여부	경비율(%)	비고
l . 매출액	4,504,975,787	_		
Ⅱ. 매출원가	4,198,513,375	_		
Ⅲ. 일반관리비	408,582,536	_	9.67%	
1. 직원급여	194,702,400	0	4.64%	
2. 상여금	63,098,000	0	1.50%	
3. 퇴직급여	24,690,000	0	0.59%	
4. 복리후생비	29,455,051	0	0.70%	
5. 여비교통비	5,563,828	0	0.13%	
6. 통신비	5,157,981	0	0.12%	
7. 세금과 공과금	15,431,056	0	0.37%	
8. 감가상각비	13,500,000	0	0.32%	
9. 지급수수료	40,081,069	0	0.95%	
10. 수선비	115,400	0	0.00%	
11. 보험료	14,287,751	0	0.34%	
12. 광고선전비	2,500,000	X	_	직접계산

 \bigcirc 일반관리비율 : = \sum (일반관리비 인정금액) ÷ (매출원가)

= 9.67% = 408,582,536원 ÷ 4,198,513,375원



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바. 이 윤

-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제조업체의 영업이익
 - 순금융비용(이자비용-이자수익) + 자기자본비용(자기자본금액 × 산업평균 자기자본영업이익률*
 - * 산업평균 자기자본영업이익률 : 기업경영분석(한국은행 발표) 제조업(중소기업) 자기자본 영업이익률 3년 평균
 - 「국가계약법」시행규칙 제8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)을 초과하지 못함
 ※ 국가계약법 이윤계산법 : (노무비 + 경비 + 일반관리비) × 25%(제조·구매)

<순금융비용 산정방법: 예시>

- 10,000,000원(이자비용) 1,000,000원(이자수익) = 9,000,000원(순금융비용)
- 2,000대(직전년도 제조수량) × 10,000원(해당제품 1개당 제조원가) = 20,000,000원(직전년도 해당제품 제조원가)
- (직전년도 재무제표) 당기제조원가 : 500,000,000원, 제품매출원가 : 200,000,000원, 총 매출원가 : 300,000,000원
- 배분율 : $\frac{20,000,000원(직전년도해당제품제조원가)}{500,000,000원(당기제조원가)}$ × $\frac{200,000,000원(제품매출원가)}{300,000,000원(총매출원가)}$
- 9,000,000원(순금융비용) × 2.667%(배분율) = 240,030원(해당제품 전체 순금융비용)
- 240,030원(해당제품 전체 순금융비용) ÷ 2,000대(직전년도 제조수량) = 120원



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<자기자본금액이 ()보다 큰 경우 : 예시>

- 자기자본비용
- 자기자본금액(직전년도 재무제표) : 200.000.000원
- 자기자본 영업이익률 : 10.43% [제조업(중소기업) 영업이익 ÷ 제조업(중소기업) 자기자본 3년 평균]
- 200,000,000원 × 10.43% = 20.860,000원(전체 자기자본 영업이익)
- 20.860,000원(전체 자기자본 영업이익) × 2.667%(배분값) = 556,336원(해당제품 자기자본 영업이익)
- 556,336원(해당제품 자기자본 영업이익) ÷ 2,000대(직전년도 제조수량) = 278원(해당제품 자기자본이익)
- 이윤 : 120원 + 278원 = 398원

<자기자본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: 예시>

- 총자산영업이익
- 자산(직전년도 재무제표) : 800,000,000원
- 총자산영업이익률 : 4.46% [제조업(중소기업) 영업이익 ÷ 제조업(중소기업) 자산 3년 평균]
- 800,000,000원 × 4.46% = 35,680,000원 × 2.667%(배분값) = 951,586원
- 951,586원 ÷ 2,000대(직전년도 제조수량) = 476원(해당제품 총자산영업이익)
- 이윤 : 순금융비용 120원, 476원 중 작은금액

<회계자료가 없거나, 재무제표가 해당제품과 무관한 경우>

-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 : 4.68%[제조업(중소기업) 영업이익 ÷ 제조업(중소기업) 매출원가 3년 평균]
- 이윤 : (제조원가 + 일반관리비) × 4.68%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

사. 유통비용

- 총원가와 최종소비자가격의 차이로 복지용구사업소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제품의 물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
 - 총원가 × 33.58% = 제품가격 × 25.14%
 - ※ 해당 유통비율은 2013년 기업경영분석 일반소매업(통신판매업 제외) : 1 매출원가 ÷ 매출액 산정비율임

<참고사항>

○ 대여품목의 경우 유통비용이 변동 될 때마다 계약수정, 입소이용의뢰서 재발급, 계약서 확인을 위한 수급자 (보호자) 방문 등이 필요한데, 유통비용 변경에 따른 월 대여료 변경금액이 미비하고 제반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어 '15년 9월 변경된 비율을 고정비율로 사용하고 있으며, 구입품목 역시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비율을 고정하여 사용하고 있음

유통비율 변동에 따른 월대여료 비교(총원가 374,300원 기준)

(단 위: 원)

						(
구 분	2018년	2017년	2016년	2015년	2014년	2013년
매 출 액	57,626,641	48,348,474	46,743,281	47,816,142	48,485,105	45,304,868
매출원가	43,713,276	36,213,657	34,647,072	35,044,079	35,888,150	33,915,349
유통비율	24.144%	25.099%	25.878%	26.711%	25.981%	25.140%
제품가격(예시)	493,000	500,000	505,000	511,000	506,000	500,000
월 대 여 료	32,000	32,200	32,400	32,600	32,400	32,200



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아. 부가가치세

- ○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부가가치세로 영세율을 제외하고 모두 10%
 - 영세율 품목(「조세특례제한법」시행령 제105조 관련) : 성인용보행기, 지팡이, 욕창예방방석·매트리스, 수동휠체어 ※ 대여서비스는「부가가치세법」시행령 35조 14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

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제 2 조 (수입제품)

1. 원가의 구성

수입상품은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완제품 상태로 수입한 것으로,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

	구 분	내용				
매	① 상품 매입액 - 수입물품의 원화표시원가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					
입 원	입 ② 매입(수입)경비 - 통관료, 보세창고료, 하역료, 국내운반비 등 상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					
가	③ 소 계	① 상품 매입액 + ② 매입(수입) 경비				
	④ 일반관리비 -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속하지 않은 비용					
	⑤ 적정이윤	- 매입원가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수입업체의 영업이익				
	⑥ 총 원 가	③ 매입원가(소 계) + ④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+ ⑤ 적정이윤				
	① 유통비용	- 총원가와 최종소비자가격의 차이로 복지용구사업소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제품의 물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				
	⑧ 부가가치세	- 「부가가치세법」에 의한 부가가치세로 영세율을 제외하고 모두 10%				
	공단산출가격 ⑥ 총원가 + ⑦ 유통비용 + ⑧ 부가가치세					

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

2. 산정방법

가. 상품 매입액

- 수입물품의 원화표시원가에 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CIF(Cost Insurance Freight)를 기준으로 매입액을 계산
 - 복지용구 환율은 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[별표7] 복지용구 환율 연동 조정기준에 따라 적용이 되며, 최초 산정 시 적용환율은 미국달러 1달러 1,166.29원, 100엔 1,113.58원으로 계산되고 있음
 - ※ 미국달러, 엔화 이외의 통화는 직전년도 미국달러 대 해당통화의 평균비율을 적용
 - 관세 면세 적용대상(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[별표2] : 목욕의자, 성인용보행기(워커만), 간이변기(소변용), 욕창예방 (에어 삽입형)방석·매트리스. 수동휠체어. 이동욕조 ※ 해당대상은 법·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<상품매입액 산정방법 : 예시>

- 수입단가: \$30, 수입수량: 500개, 수입조건: FOB, 결제금액: \$30,000, 운임 400,000원, 관세 8%
- 원화수입금액 : \$30(수입단가) × 1,166.29원(기준환율) = 34,989원
- 제품운임: \$30(수입단가) × 500개(수입수량) = \$15.000(해당제품 전체수입금액) ÷ \$30.000(전체 수입금액)
 - = 50%(해당제품 수입금액 비율) × 400,000원(운임) = 200,000원(해당제품 운임) ÷ 500개(수입수량)
 - = 400원(제품 1개당 운임)
- 해당제품 원화환산매입액 : 34,989원 + 400원 = 35,389원
- 관세 : 35.389원 × 8%(관세) = 2.831
- 상품매입액 : 35,389(원화환산매입액) + 2,831(관세) = 38,220
- 수입건수가 많은 경우 가중평균 가격 적용



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나. 매입경비

- 통관료, 보세창고료, 하역료, 국내운반비 등 상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
 - 「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[별표4] 공단산출가격 계산기준에 따라 매입경비 비율(매입경비 ÷ 상품매입액)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

<매입경비 산정방법>

- 상품 매입액 × 매입경비율
- 매입경비율 : 최근 1년 가중평균 매입경비율과, 단순평균 비율 중 높은 비율을 적용
- 최근 1년간 가중평균 매입경비율 : 전체 매입경비 계 ÷ 전체 과세가격 계
- 최근 1년간 단순평균 매입경비율 : $\sum (개별 매입경비 ÷ 과세가격) ÷ 최근 1년 수입 건수$



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

공단산출가격(원가분석) 산정방법

다. 일반관리비(산정방법은 국내제조와 동일)

-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매입원가에 속하지 않은 비용
 - 매입원가 × 일반관리비율
 - 「국가계약법」시행규칙 제6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)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데 관련이 있는 일반관리비만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, 동법 제8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)을 초과하지 못함 ※ 10. 수입물품의 구매: 100분의 8 적용

라. 이 윤(산정방법은 국내제조와 동일)

- 매입원가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수입업체의 영업이익
 - 순금융비용(이자비용-이자수익) + 자기자본비용(자기자본금액 × 산업평균 자기자본영업이익률*
 - * 산업평균 자기자본영업이익률 : 기업경영분석(한국은행 발표) 제조업(중소기업) 자기자본 영업이익률 3년 평균
 - 「국가계약법」시행규칙 제8조(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)을 초과하지 못함 ※ 국가계약법 이윤계산법 : (매입경비+일반관리비) × 10%(수입제품)
- 마. 유통비용(국내제조와 동일) : P.16 참조
- 바. 부가가치세(국내제조와 동일) : P.17 참조